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규정

제정 2021.7.21.

제1차 개정 2022.6.29.

제2차 개정 2025.3.14.

## 제1장 교육과정위원회

**제1조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학생의 발달과 학사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제2조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임무)

- ①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감(부위원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진로진학부장, 각 학년부장, 각 학과장,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간사)로 구성한다.
- ② 교육과정위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 ③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은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안전에 대하여 자문한다.
- ④ 간사는 자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교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제3조 (교육과정위원회 자문 내용)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①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모색
- ②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 ③ 학교 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지원활동
- ④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
- ⑤ 체험학습, 교환학습, 기타 학교 교육활동 관련 타당성 검토

## 제2장 선택 과목 개설

### 제4조 (선택 과목의 개설 및 폐강)

- ①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50%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생 선택 인원이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의 과목 개설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신청 인원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5명 이하	6명 이상 ~ 50% 미만	50% 이상
폐강	교과협의회 논의 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	개설

  

신청 인원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 50% 미만	50% 이상
폐강	개설

- ④ 학년말에 수강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개설에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목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 이상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분반하여 개설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 또는 수업 담당교사의 동의를 받고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⑥ 위 ②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학교 교육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업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⑦ 학교는 위 ⑥항의 이유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한 사유를 학생에게 안내하고, 희망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제시하거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 ⑧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50%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5조 ‘소수 선택 과목’의 개설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제5조 (소수 선택 과목의 개설)

- ① 제4조 ②,③항에 따라 폐강되었음에도 4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0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수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진로 역량 제고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학생(학부모) 또는 교과협의회에서 개설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②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
1. 다수 학생이 선택한 수강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2.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3. 교원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소수 선택 교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변경 포기’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6조 (공장 운영)**

- ① 학생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 학생별 공장 시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장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② 공장 시간 지도(관리) 교사는 수업 시수, 담당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3장 수강신청 절차**

**제7조 (수강신청 절차)**

- ① 다음 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수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변경	수업 운영 준비
[3, 4월] -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  [5월] - 교육과정 박람회 등을 통한 과목 안내 -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 상담 운영  [6월] - 모든 선택 과목 대상 사전 수요 조사 진행  [7, 8월] - 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마련	[9, 10월] - 1차 수강 신청 - 1차 수강 신청 결과 분석 - 2~3차 수강 신청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1차 확정 (개설 과목 확정 등) - 수강생 및 수업 반 편성 - 교과서 주문 -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 제출	[11월]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및 절차 안내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운영 - 수강 신청 변경 완료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최종 확정 - 차년도 소요 예정 교원 수 확인	[12, 1, 2월] - 수업 시간표 작성 (학생별, 교사별, 교실별) - 수업 운영 준비

**제4장 선택 과목의 변경**

**제8조 (학생의 선택 과목 변경)**

- ① 학생이 수강 신청을 통해 선택한 과목은 10월 말까지 학생, 학부모의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정하고, 교과서 주문, 수강 반 수 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 변경, 수강 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항의 수강 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해당 학년 종업식 전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③ ②항에 따른 선택 과목의 변경은 제9조의 절차를 따른다.
- ④ 학생이 수강 중인 당해 학년도의 선택 과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경을 불허한다.
- ⑤ 다만, 학적 변동(편입생, 전입생, 복학), 천재지변, 사무착오, 장기 결석, 학교폭력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과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변경 신청 기간은 해당 학기 수업일 수 기준으로 1/3선 이내(수강인정이 되는 최소기간 준수)<sup>1)</sup>까지이며,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선택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변경 사유에 대한 소명 및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과목 변경 절차)

- ① 선택 과목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1차 상담한다.
- ② 학생 및 학부모는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2차 상담한다.
- ③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서명한 ‘수강과목 변경 신청서’ 등의 서류(서식 1~4)를 제출한다.
- ④ 필요할 경우 학부모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및 학교장의 허가로 과목을 변경한다.

**제10조 (학교의 필요에 따른 과목 변경)**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수강과목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1. 교육과정 담당 부서 및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2. 학생/학부모 면담 및 동의서 징구
3. 학교장의 승인

## 제5장 이수과정 및 수업 일수

### 제11조 (이수 과정)

- ① 교육과정은 3년간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 ②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역의 특수성, 계절,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한다.

### 제12조 (수업 일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① 연간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②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수는 정기 고사를 포함하여 190일(34주)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연간 수업 일수에서 위 ②항을 제외한 일수를 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표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시간으로 확보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④ 공휴일, 행사 활동 등을 고려하여 연간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행사 활동이 특정 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요일별 수업 일수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

### 제13조 (수업시수의 확보 및 운영)

- ① 수업시수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실제로 투입된 시수와 고사 시수(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수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포함한다.
- ② 일일 수업 시간 수를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수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③ 요일별 수업 시수를 월별 또는 학기별로 점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 ④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성에 따라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⑤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학점 50분 기준으로 하여 16회,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학점 50분 기준으로 하여 17회(16+1)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한다.

## 제6장 교과 운영

**제14조 (기본 원칙)** 교육부 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전북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학년별 교과지도 계획을 작성한다. 학년별 교과지도 계획에는 교과운영 계획, 교수-학습 활동, 중점지도 사항, 연간 학습지도 계획(대단원, 지도내용, 방법 및 유의점, 시수, 비고), 평가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15조 (운영 방침)

- 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교수-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교과별 지도 계획을 참조하여 학교와 학생 수준에 적합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활용한다.
- ② 교과간의 관련성과 학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교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복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③ 필요한 경우 교과의 내용 배열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특히 전북 지역 및 본교의 지역 특성을 보충 내용으로 심화 지도한다.
- ④ 탐구 중심 학습 활동을 전개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계획하여 운영한다.
- ⑤ 학습 활동에서 발표, 토의 활동과 실험·실습, 실기, 조사,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⑥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한다.
- ⑦ 학생들의 수준, 흥미·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의 개별화에 노력한다.
- ⑧ 교육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기준 학점보다 학점이 증가된 과목은 교과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감소된 과목은 핵심적인 내용이 학습되도록 요약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⑨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교과 지도 계획의 조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⑩ 외국어 과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도록 계획하고 과학 및 예·체능 과목은 실험, 실습, 실기 위주의 학습 활동이 50% 이상 전개되도록 계획한다.

## 제7장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제16조 (기본 원칙)** 창의적 체험활동은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학교 여건과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 과제를 설정, 육성함으로써 특별활동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 제17조 (운영 방침)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은 매 학기 3학점씩 배당하여 운영한다.
- ②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③ 자치활동은 학급별로 연간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급회 활동을 비롯하여 상담 활동, 진로 설계 활동, 친교 활동 등의 적응 활동도 적절하게 실시한다.
- ④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 ⑤ 야외 활동 및 교외 활동과 방학 중 활동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⑥ 봉사활동은 특별활동에 배당된 학점(단위) 수에서 확보하는 시간과 교육 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일수에서 별도로 확보하는 시간을 합하여 연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지침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 제8장 평가

### 제18조 (기본 원칙)

- ①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전북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

조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운영 방침이 달성되는 방향으로 평가 방침을 설정한다.

- ② 전북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③ 학업성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 평가관리와 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계도 활동과 상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19조 (교과 영역 평가)

- ① 각 교과별 평가 영역, 방법, 횟수, 세부 기준(배점), 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교과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지한다.
- ② 교과별로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③ 교사의 면접과 관찰 기록, 학생이 제출한 활동 상황 보고서, 포트폴리오, 활동 누가 기록부, 출석 상황,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한다.
- ④ 선택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논술형 등의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⑤ 지적인 면이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평가에 역점을 두되, 정의적·기능적 영역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⑥ 실험·실습 및 실기 학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⑦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제20조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 ① 자율활동은 활동의 특징과 연관하여 학생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② 자율활동은 활동명, 연간 이수 시간, 평가 결과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한다.
- ③ 동아리활동은 활동명, 연간 이수 시간, 평가 결과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한다.
- ④ 영역별 활동의 평가는 활동 상황의 관찰을 통한 평가, 학생의 활동 실적을 통한 평가, 질문지를 활용한 평가,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⑤ 영역별 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고, 학생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한다. 이때, 교내·외에서의 특별한 활동 실적이 반영되도록 한다.
- ⑥ 영역별로 평가의 준거가 될 평정 척도 또는 평가 관점 등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교사가 종합 한다.

#### 제21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 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작

성하여 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하에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부 칙

제1조(제정 및 공포) 이 규정은 2021년 7월 21일 제정 및 공포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 및 공포) 제1차 개정안은 2022년 6월 29일 개정 및 공포한다.

제4조(시행일) 제1차 개정안은 2022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행일) 제2차 개정안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 수강과목 변경 신청서

입학년도		학번		이름	
수강 신청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강과목의 중도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202   년    월    일					
				본인 확인:	(인)
				학부모 확인:	(인)
				담임교사 확인:	(인)

※변경 사유는 구체적으로(과목 폐강, 담임 선생님 상담 등) 기재하기 바랍니다.



[서식 3]

## 교사 상담 의견서

입학년도		학번		이름	
------	--	----	--	----	--

단계	상담 내용	상담일시	상담자
1			담임 교사 (성함)
2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성함)

위와 같이 학생의 선택 과목 변경 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담임교사 확인: (인)  
진로·진학 상담교사 확인: (인)

